2022년도 간호조무사 국가시험 시행계획 공고

2022년도 상반기 및 하반기 간호조무사 국가시험 시행계획을 간호조무사 및 의료유사업자에 관한 규칙 제3조제4항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.

※ 단, 시험일정은 코로나19 추이 등에 따라 다시 변경될 수 있으며, 변경될 경우 해당사항은 공고를 통해 안내할 예정입니다.

2021. 11. 23.

한국보건의료인국가시험원장

1. 응시자격

가. 응시자격

시험직종	응시자격	
간호조무사	의료법 제80조에 해당하는 자로서 동 법 제10조에 해당하지 않는 자	

※ 유의사항

- O 응시원서 접수 당시 간호조무사 교육훈련기관에서 학과교육 이수중이거나 의료기관 또는 보건소에서 실습과정을 이수중인 자는 시험일 이전까지 학과교육 및 실습 과정을 모두 이수해야만 시험에 응시할 수 있습니다.
- O 간호학을 전공하는 대학이나 전문대학[구제(舊制) 전문학교와 간호학교를 포함]에서 간호 조무사 국가시험 응시일로부터 6개월 이내에 졸업이 예정된 사람에게는 응시자격을 부여하되, 6개월 이내에 졸업이 확인된 자에 한하여 합격을 인정합니다.
- 의료법 제80조제2항에 따라 보건복지부 장관의 지정·평가를 받은 간호조무사 교육 훈련기관에서 학과교육 이수한 자에 한하여 응시자격을 인정합니다.
- ※ 응시자격 관련 법률

의료법

제80조(간호조무사 자격) ① 간호조무사가 되려는 사람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으로서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교육과정을 이수하고 간호조무사 국가시험에 합격한 후보건복지부장관의 자격인정을 받아야 한다. 이 경우 자격시험의 제한에 관하여는 제10조를 준용한다.



- 1. 초·중등교육법령에 따른 특성화고등학교의 간호 관련 학과를 졸업한 사람(간호조무사 국가 시험 응시일로부터 6개월 이내에 졸업이 예정된 사람을 포함한다)
- 2. 「초·중등교육법」제2조에 따른 고등학교 졸업자(간호조무사 국가시험 응시일로부터 6개월 이내에 졸업이 예정된 사람을 포함한다) 또는 초·중등교육법령에 따라 같은 수준의 학력이 있다고 인정되는 사람(이하 이 조에서 "고등학교 졸업학력 인정자"라 한다)으로서 보건복지 부령으로 정하는 국·공립 간호조무사양성소의 교육을 이수한 사람
- 3. 고등학교 졸업학력 인정자로서 평생교육법령에 따른 평생교육시설에서 고등학교 교과 과정에 상응하는 교육과정 중 간호 관련 학과를 졸업한 사람(간호조무사 국가시험 응시일로 부터 6개월 이내에 졸업이 예정된 사람을 포함한다)
- 4. 고등학교 졸업학력 인정자로서「학원의 설립·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」제2조의2 제2항에 따른 학원의 간호조무사 교습과정을 이수한 사람
- 5. 고등학교 졸업학력 인정자로서 외국의 간호조무사 교육과정(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인정기준에 해당하는 교육과정을 말한다)을 이수하고 해당 국가의 간호조무사 자격을 취득한 사람
- 6. 제7조제1항제1호 또는 제2호에 해당하는 사람
- ② 제1항제1호부터 제4호까지에 따른 간호조무사 교육훈련기관은 보건복지부장관의 지정· 평가를 받아야 한다. 이 경우 보건복지부장관은 간호조무사 교육훈련기관의 지정을 위한 평가업무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절차·방식에 따라 관계 전문기관에 위탁할 수 있다.
- ③ 보건복지부장관은 제2항에 따른 간호조무사 교육훈련기관이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정받는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지정을 취소할 수 있다.
- ④ 간호조무사는 최초로 자격을 받은 후부터 3년마다 그 실태와 취업상황 등을 보건복지부 장관에게 신고하여야 한다.
- ⑤ 제1항에 따른 간호조무사의 국가시험·자격인정, 제2항에 따른 간호조무사 교육훈련기관의 지정·평가, 제4항에 따른 자격신고 및 간호조무사의 보수교육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.

나. 결격사유 등

시험직종	결격사유	응시자격 제한, 부정행위자에 대한 조치
시합격 공	「의료법」제8조	「의료법」제10조
간호조무사	제8조(결격사유 등)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의료인이 될 수 없다. 1. 「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」제3조제1호에 따른 정신질환자. 다만, 전문의가 의료인으로서 적합하다고 인정하는 사람은 그러하지 아니하다. 2. 마약·대마·향정신성의약품 중독자 3. 피성년후견인·피한정후견인 4. 이 법 또는 「형법」제233조, 제234조, 제269조, 제270조, 제317조제1항 및 제347조(허위로 진료비를 청구하여 환자나진료비를 지급하는 기관이나 단체를 속인경우만을 말한다), 「보건범죄단속에 관한특별조치법」, 「지역보건법」, 「후천성면역결핍증 예방법」, 「응급의료에 관한 법률」,	제10조(응시자격 제한 등) ①제8조 각 호의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국가시험등에 응시할 수 없다. ②부정한 방법으로 국가시험등에 응시한자나 국가시험등에 관하여 부정행위를 한자는 그 수험을 정지시키거나 합격을 무효로한다. ③ 보건복지부장관은 제2항에 따라 수험이정지되거나 합격이 무효가 된 사람에 대하여 처분의 사유와 위반 정도 등을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그 다음에 치러지는 이 법에 따른 국가시험등의 응시를 3회의 범위에서 제한할수 있다.



시험직종	결격사유	응시자격 제한, 부정행위자에 대한 조치
시됩식공	「의료법」제8조	「의료법」제10조
	「농어촌 등 보건의료를 위한 특별 조치법」, 「시체해부 및 보존에 관한 법률」,「혈액 관리법」,「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」, 「약사법」,「모자보건법」, 그 밖에 대통령령 으로 정하는 의료 관련 법령을 위반하여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형의 집행이 종료되지 아니하였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 하기로 확정되지 아니한 자	

※ 유의사항

O 국가시험에 합격하더라도 간호조무사 결격사유가 있는 것으로 확인된 때에는 합격이 취소되오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.

2. 시험일정

구분	응시원서 접수기간	응시수수료	시험일	합격자 발표 예정일시	시험장소 공고일 (국원 홈페이공고)
상반기	인터넷: 2022. 1. 4.(화)~ 1. 11.(화) 방 문: 2022. 1. 12.(수)	37,000원	2022. 3. 19.(토)	2022. 4. 5.(화) 10:00	2022. 2. 16.(수)
하반기	인터넷: 2022. 7. 5.(화)~ 7. 12.(화) 방 문: 2022. 7. 13.(수)	37,000원	2022. 9. 24.(토)	2022. 10. 11.(화) 10:00	2022. 8. 24.(수)

3. 시험장소(응시지역)

서울, 부산, 대구, 인천, 광주, 대전, 울산, 세종, 경기, 강원, 충북, 충남, 전북, 전남, 경북, 경남, 제주

(도별 시험지역은 응시원서 접수 시 안내 예정)

* 응시원서 접수 시 시험장소(응시지역) 선택은 응시자의 주민등록상의 주소지·교육기관 소재지와 관계없이 선택할 수 있습니다.

4. 접수방법 및 제출서류 등

구분	인터넷 접수	방문 접수
응시원서 접수 및 응시수수료 결제시간	 응시원서 접수 시작일 09:00부터 접수 마감일 18:00까지 접수 마감일 18:00까지 응시수수료를 결제해야 접수가 완료됨. 	• 응시원서 접수 기간 중 09:30부터 18:00까지
접수장소	• www.kuksiwon.or.kr	• 서울 광진구 자양로 126 성지하이츠 2층 한국보건 의료인국가시험원 별관



구분	인터넷 접수	방문 접수		
결제방법	 온라인 계좌이체 신용카드 결제(단, 직불카드 및 해외에서 발행한 신용카드 제외) 가상계좌 입금 현금자동입출금기(CD/ATM)를 이용한 입금은 불가능하므로, 인터넷 뱅킹 또는 은행영업시간에 은행을 방문하여 입금해야 합니다. 단, 타행이체수수료는 본인이 부담해야 합니다. 감면 자격확인 ※ 모든 결제방법은 타인명의의 계좌 및 신용카드로도 결제가 가능합니다. 	• 현금 • 신용카드(단, 직불카드 및 해외에서 발행한 신용카드 제외)		
제출서류	• 사진파일 : 276×354픽셀 이상 크기 ※ 3.5cm×4.5cm, 200dpi 이상 크기 ※ 증명사진을 스캔하실 때는 해상도 최소 200dpi설정(600dpi 이상 권장)	• 응시원서 : 1매 (사진 3.5×4.5cm 2매 부착) • 개인정보 수집·이용·제3자 제공 동의서 1매		

※ 단, **<보건복지부장관이 인정하는 외국 교육과정 이수자>**의 경우는 **다음의 서류를 응시원서에 첨부하여 방문접수** 하여야 합니다.

첨부서류	주의사항
1. 자격증사본 1매 2. 이수증명서 1매 3. 성적증명서 1매	•이수한 교육기관이 속한 국가의 외교 관할 행정기관에서 아포스티유 (Apostille) 확인 - 아포스티유 협약 미가입국의 경우, 현지 주재공관(대사관 또는 영사관)에서 영사확인 후 우리말로 번역·공증하여 제출 - 단, 영문으로 작성된 서류는 번역·공증을 생략할 수 있음
4. 출입국사실증명서 1매	•이수한 교육기관의 입학일부터 졸업일까지 포함되어 있어야 함
5. 사진 2매	•여권용 크기(3.5×4.5 cm)의 동일한 사진 2매 •인화지로 출력한 원본만 가능(스캔 후 일반종이 출력물은 불가)
6. 개인정보 수집·이용·제3자 제공 동의서 1매	

- 외국학교 등 인정심사를 신청하여 응시자격이 인정(확인)된 자 및 기 응시경력자 중 이전에 서류를 제출한 경우에는 서류 제출없이 인터넷 접수(회원가입-로그인-마이페이지-과거 시험 정보찾기-실명인증-로그인)가 가능합니다.
- 제출했던 서류는 5년(서류보존 기간)이내에는 다시 제출할 필요가 없습니다.

5. 응시원서 접수 시 유의사항

- 가. 응시원서의 주소지는 현재 거주지를 도로명 주소로 기재해야 합니다.
- 나. 응시원서 접수 마감 후에는 **추가접수를 받지 않으니 반드시 접수기간 내에 접수**하시기 바랍니다.



- 다. 응시원서 접수는 인터넷(www.kuksiwon.or.kr) 및 방문접수(접수장소: 국시원 별관)만 가능하며 우편접수는 허용하지 않습니다.
- 라. 응시원서의 기재내용이 사실과 다르거나, 기재사항의 착오·누락 또는 연락불능 및 응시 자격 결격 등으로 인한 불이익은 응시자의 책임으로 합니다.
- 마. 응시서류는 반환하지 않으며, 접수를 취소하는 경우 [국시원 홈페이지-응시원서접수-응시취소신청]에서 로그인 및 본인확인 후 '응시취소 및 응시수수료 환불 신청서'를 작성 하여 등록하시면 응시수수료 환불기준에 의거 응시수수료를 환불합니다.
- 바. 시험장소 변경은 다음과 같이 <u>인터넷으로만 신청</u>할 수 있으며, 팩스 또는 전자우편 신청은 불가합니다.

구분	신청방법(인터넷)
	· 시험장소 공고 7일전까지 [국시원 홈페이지] 로그인 후 마이
○ 티 지역으로이 배경	페이지에서 변경
○ 타 지역으로의 변경	• 시험장소 공고 이후 시험시행일 5일전까지 [국시원 홈페이지
	-응시원서접수-응시지역(시험장)변경] 메뉴를 이용하여 신청
○ E이기어 비해되어 기원자 범건	• 시험장소 공고일부터 10일 이내에 [국시원 홈페이지-응시
○ 동일지역 내에서의 시험장 변경	원서접수-응시지역(시험장)변경] 메뉴를 이용 하여 신청

- 사. 장애인 및 질병, 사고 등으로 응시에 현저한 지장이 있는 자는 응시원서 제출 시 또는 시험 20일 전까지 편의지원을 신청할 수 있으며(단, 점자 또는 음성지원컴퓨터 지원을 받고자 하는 경우에는 시험 30일 전까지 편의지원 신청해야 함), 장애유형별 편의제공 기준 및 절차 등은 [국시원 홈페이지-응시원서접수-보건의료인국가시험 편의제공 대상자 지정 신청]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. 단, 신청기간을 경과한 경우 편의제공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.
- 아. 응시원서 접수일 현재 「국민기초생활 보장법」제2조에 의한 국민기초생활수급자, 법정 차상위계층,「한부모가족지원법」제5조 및 제5조의2에 의한 한부모가족지원대상자 중 응시수수료를 감면받고자 신청하는 응시자에게는 응시수수료를 전액 감면합니다.
 - 응시수수료는 응시수수료 결제 시 '감면 자격확인'을 통해 전액 감면합니다.
 - O 응시원서 접수 시 감면을 받지 못한 경우 신청기간 내에 별도 신청을 통해 감면 받을 수 있습니다.
 - 취약계층 응시수수료 감면 절차 등은 [국시원 홈페이지-응시원서접수-응시수수료 감면 안내]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.
 - 응시수수료 감면 신청기간: 응시원서 접수 시작일부터 마감일 이후 7일까지



6. 시험시간표

교시	시험과목[문제수]	응시자 입실시간	시험시간	배점	시험방법
1교시	1. 기초간호학 개요 [35] (치의학기초개론 및 한의학기초개론을 포함한다) 2. 보건간호학 개요 [15] 3. 공중보건학개론 [20] 4. 실기 [30]	09:30	10:00~11:40 (100분)	1점 /1문제	객관식 (5지 선다형)

- ※ 동 시간표상의 각 교시별 과목 순서에 따라 문항 순서 배열
- ※ 간호조무사 국가시험에서 법률을 적용하여 정답을 구하는 시험문제는 <u>시험시행일 현재</u> 시행되고 있는 법률을 기준으로 출제됩니다.

7. 합격자 결정방법

매 과목 만점의 40퍼센트 이상, 전 과목 총점의 60퍼센트 이상 득점한 자를 합격자로 합니다.

8. 응시자 유의사항

- 가. 간호조무사 국가시험의 시험문제 및 정답은 응시자를 대상으로 공개합니다.
 - O 시험문제 및 가답안의 공개는 응시자를 대상으로 국시원 홈페이지를 통해 시험일로부터 5일간 공개하며, 일정 및 이의신청 절차 등은 시험문제지의 '응시자 안내사항'을 참고 하시기 바랍니다.
 - 이의신청에 대한 개별회신은 하지 않으며, 합격자 발표 시 최종 정답 발표로 이를 대신합니다.
 - 이의신청 기간 이후 제기되는 의견은 심사에서 제외됩니다.
- 나. 시험문제는 저작권법에 따라 보호되는 저작물이며, 시험문제의 일부 또는 전부를 무단 복제, 배포, (전자)출판 하는 등 저작권을 침해하는 경우 저작권법에 의하여 민·형사상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.
- 다. 응시자는 시험일 오전 09:30분까지 해당 시험실의 지정된 좌석에 앉아야 합니다.
- O 시험시작 타종이 울리면 응시자는 시험실에 입실할 수 없습니다.
- 응시번호별 지정된 시험장에서만 응시할 수 있으며, 타 시험장에서는 응시할 수 없습니다.
- O 일부 시험장의 경우 시험시작 2시간 이전에는 출입을 제한할 수 있음을 유의하시기 바랍니다.
- 라. 응시자 준비물 : 신분증, 응시표, 필기도구(컴퓨터용 흑색 수성사인펜은 지급함)
 - 신분증을 지참하지 않은 자는 시험에 응시할 수 없습니다.

신분증의 범위: 주민등록증(유효기간 내의 주민등록증발급신청확인서), 운전면허증, 여권(만료일 이내), 외국국적동포 국내거소신고증, 외국인등록증, 영주증, 청소년증(유효기간 내의 청소년증발급신청확인서), 주민등록번호가 기재된 장애인등록증(장애인복지카드)

- *모바일 운전면허증은 불인정
- *주민등록번호 없는 여권은 여권정보증명서를 함께 제시해야 신분증으로 인정
- 응시표를 분실한 경우, 시행본부에서 응시번호만 확인된 경우에도 시험에 응시할 수 있습니다. 단, 신분증은 반드시 지참하여야 합니다.

- 마. **답안카드의 작성은 반드시 컴퓨터용 흑색 수성사인펜만을 사용**해야 하며, 기타 필기 도구(연필, 적색펜 등)를 사용할 경우 해당 문제가 '0점' 처리될 수 있습니다.
- O 답안카드는 이미지 스캐너를 이용하여 채점합니다.
- O 답안카드에 컴퓨터용 흑색 수성사인펜 이외 연필, 적색펜 등을 사용하거나, 특히 펜의 종류와 색깔과 상관없이 예비마킹을 할 경우에는 중복 답안 등으로 채점되어 해당 문제가 '0점' 처리될 수 있으므로 각별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.
- O 예비마킹 등으로 인하여 답안카드에 컴퓨터용 흑색 수성사인펜 이외 필기구의 흔적이 남아 있는 경우에는 중복 답안으로 채점되어 해당 문제가 '0점' 처리될 수 있으므로 필히 수정테이프로 깨끗이 지워야 합니다.
- O 답안카드는 구기거나 이물질로 더럽혀서는 안 됩니다.
- O 답안카드에는 시험직종, 교시, 문제유형, 성명, 응시번호, 정답 외에 다른 어떠한 형태의 표시도 하여서는 안 됩니다.
- O '별첨3'의 답안카드 견본은 참고용이며, 실제와는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.
- 바. 답란을 잘못 표기하였을 경우에는 답안카드를 교체하여 작성하거나, 수정테이프를 사용하여 답란을 수정할 수 있습니다.
- O 응시자가 희망할 경우 답안카드 교체를 할 수 있습니다.
- O 수정테이프는 응시자가 요구 시 시험실 감독관이 제공하며, 응시자 본인이 가져온 수정 테이프도 사용 가능합니다.
- O 수정테이프를 사용하여 답란을 수정한 경우 반드시 수정테이프가 떨어지지 않게 손으로 눌러주어야 하며, 불완전한 수정 처리로 인해 발생하는 책임은 응시자에게 있으니 주의하시기 바랍니다.
- O 수정테이프가 아닌 수정액 또는 수정스티커를 사용할 수 없습니다.
- 기타 답안 작성 및 표기의 잘못으로 인하여 일어나는 모든 불이익은 응시자 본인이 감수하여야 합니다.
- 사. 답안카드에 시험 교시, 문제유형, 성명, 응시번호 등을 표기하지 않거나 틀리게 표기하여 발생하는 불이익은 응시자 책임이므로 주의하시기 바랍니다.
- 아. 시험 중에는 어떠한 통신기기 및 전자기기(휴대전화, 스마트폰, 태블릿PC, 스마트시계, 스마트밴드, (스마트)이어폰, 전자계산기, 전자사전 등)도 소지 또는 사용할 수 없으며, 발견될 시에는 부정행위로 처리될 수 있습니다.
- 자. 시험시간 중에는 퇴실하지 못하므로, 시험 전에 과다한 수분섭취를 자제하고 배탈 예방 등 건강관리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.
 - 배탈·설사 등으로 **불가피하게 시험을 볼 수 없는 경우 화장실을 이용할 수 있으나 재입실이 불가**하며, 시험 종료 시까지 시행본부에서 대기하여야 합니다.
- 차. 시험실에 시계가 있더라도 정확하지 않을 수 있으므로 본인의 시계로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.
- O 계산, 통신 등이 가능한 시계(스마트시계 등)는 사용이 불가능하며, 발견될 시에는 부정행위 등으로 처리될 수 있습니다.
- 카. 시험종료 타종 후에도 답안카드를 계속 기재하거나 제출을 거부하는 경우 해당교시 성적을 '0점' 처리합니다.
 - O 시험시간 관리의 책임은 응시자 본인에게 있으며, 시험시간에는 답안카드 작성시간까지 포함되어 있으므로 시간을 잘 배분하시기 바랍니다.



- 타. 응시자 이외에는 시험장에 출입할 수 없으며, 시험장에는 차량을 주차할 수 없으므로 대중교통을 이용하시기 바랍니다.
- 파. 시험실내 응시자 개인물품 관리의 책임은 응시자 본인에게 있습니다. 응시자는 개인물품을 분실하지 않도록 주의하시기 바랍니다.
- 하. 기타 자세한 사항은 고객상담센터(☎1544-4244)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.

9. 부정행위 및 응시자 준수사항

가. 부정한 방법으로 시험에 응시하거나 동 시험에서 부정행위를 한 자는 `의료법 제10조제2항 및 제3항` 등에 의거 그 수험을 정지시키거나 합격을 무효로 하며, 처분의 사유와 위반의 정도에 따라 그 다음에 치러지는 시험의 응시가 3회의 범위에서 제한 될 수 있습니다.

부정행위자의 기준

`부정행위자`라 함은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는 사람을 말한다.

- 1. 대리시험을 치른 행위 또는 치르게 하는 행위
- 2. 시험 중 다른 응시자와 시험과 관련된 대화를 하거나 손동작, 소리 등으로 신호를 하는 행위
- 3. 시험 중 다른 응시자의 답안(실기작품 및 그 제작방법을 포함한다, 이하 같다) 또는 문제지 (시험기기를 포함한다)를 보고 자신의 답안카드(실기작품 및 시험기기로 작성하는 답안을 포함한다, 이하 같다)를 작성(제작)하는 행위
- 4. 시험 중 다른 응시자를 위하여 답안 등을 알려주거나 보여주는 행위
- 5. 시험장 내외의 자로부터 도움을 받아 답안카드를 작성하는 행위 및 도움을 주는 행위
- 6. 다른 응시자와 답안카드를 교환하는 행위
- 7. 다른 응시자와 성명 또는 응시번호를 바꾸어 기재한 답안카드를 제출하는 행위
- 8. 시험종료 후 문제지를 제출하지 않거나 일부를 훼손하여 유출하는 행위 (단, 문제지를 공개하는 시험은 제외한다)
- 9. 시험 전·후 또는 시험기간 중에 시험문제, 시험문제에 관한 일부내용, 답안 등을 다음 각 목의 방법으로 다른 사람에게 알려주거나 알고 시험을 치른 행위
 - 가. 대화, 쪽지, 기록, 낙서, 그림, 녹음, 녹화
 - 나. 홈페이지, SNS(Social Networking Service) 등에 게재 및 공유
 - 다. 문제집, 도서, 책자 등의 출판·인쇄물
 - 라. 강의, 설명회, 학술모임
 - 마. 기타 정보전달 방법
- 10. 시험 중 시험 문제내용과 관련된 물품(시험관련 교재 및 요약자료 등)을 휴대하거나 이를 주고받는 행위
- 11. 시험 중 허용되지 않는 통신기기 및 전자기기 등을 사용하여 답안을 전송하거나 작성하는 행위
- 12. 응시원서를 허위로 기재하거나 허위서류를 제출하여 시험에 응시한 행위
- 13. 시행본부 또는 시험감독관의 지시에 불응하여 시험 진행을 방해하는 행위
- 14. 컴퓨터시험 중 시험기기를 외부 유출 또는 시험 종료 후 제출하지 않는 행위
- 15. 그 밖에 부정한 방법으로 본인 또는 다른 응시자의 시험결과에 영향을 미치는 행위



나. 응시자 준수사항을 위반한 자는 '한국보건의료인국가시험원 보건의료인국가시험 부정행위자 등 처리 지침' 등에 의거 그 수험을 정지시키거나 무효로 합니다.

응시자 준수사항의 기준

`응시자 준수사항 위반자`라 함은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는 사람을 말한다.

- 1. 신분증을 지참하지 아니한 행위
- 2. 지정된 시간까지 지정된 시험실에 입실하지 아니한 행위
- 3. 시험 감독관의 승인을 얻지 아니하고 시험시간 중에 시험실에서 퇴실한 행위
- 4. 시험 감독관의 본인 확인 요구에 따르지 아니한 행위
- 5. 시험 감독관의 소지품(부정행위자의 기준 제10호 물품 제외) 제출 요구를 거부하거나, 소지품을 지시와 달리 임의의 장소에 보관한 행위
- 6. 시험 중 허용되지 않는 통신기기 및 전자기기 등을 지정된 장소에 보관하지 않고 휴대한 행위
- 7. 실기시험 시행 중에 시험과 관련된 사항을 낙서, 그림, 메모 등의 형태로 종이 등에 적거나 신체에 기록하는 행위
- 8. 그 밖에 원장이 정한 응시자준수사항을 위반한 행위

10. 코로나19 감염 예방 관련 응시자 협조사항

※ 응시자 여러분의 건강과 안전한 시험장 조성을 위해 반드시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

- 가. **(확진자 및 자가격리자 시험 안내)** <별첨1> '간호조무사 국가시험 코로나19 확진자 등 시험 시행방안 안내'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.
- 나. (시험장 입장) 시험당일 시험장 입장은 08:20부터 가능합니다. 발열, 건강상태 체크 등 본부직원 확인없이 입장이 불가하니 협조를 부탁드립니다.
 - 자가문진표를 [국시원 홈페이지-시험정보-서식모음]에서 다운로드하여 작성 후 시험장 입장 시 제출하시기 바랍니다.
- 다. (생활속 거리두기) 시험장 입·퇴장, 화장실 이용 등 이동 시 주변사람과 1.5m정도 거리 두기를 유지하고 응시자간 접촉 및 대화는 최대한 자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
- 라. (손소독제 사용) 시험장 입장, 화장실 이용 등 시험실 출입 시 마다 반드시 손소독제를 사용해 개인 위생관리를 철저하게 실천해 주시기 바랍니다.
- 마. (마스크 착용) 시험시작 후 감독관의 응시자 신원확인 시를 제외한 시험장 이용 중 (시험장 입장 시부터 시험종료 후 퇴장 시까지) 반드시 마스크를 착용하여야 하며, 거부 시에는 퇴장 조치될 수 있습니다.
- 바. (창문개방) 시험장의 원활한 환기를 위해 시험 중 창문을 모두 개방한 상태로 진행될 수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.



11. 합격자 발표 및 자격증 교부신청

- 가. 합격자는 다음과 같은 방법으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.
- O 국시원 홈페이지(www.kuksiwon.or.kr)
- 국시원 모바일 홈페이지(www.kuksiwon.or.kr)
- O 휴대폰 문자(SMS) 통보(응시원서 접수 시 휴대폰 연락처 기재 자에 한함)
- 나. 시험에 합격한 자는 자격증 교부 신청을 하여야 자격증을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.
 - O 신청기관: 한국보건의료인국가시험원
 - 신청절차: 국시원 홈페이지(www.kuksiwon.or.kr) 접속 → [회원가입] → [면허·자격· 증명서] → [면허·자격 신청 및 조회] 메뉴 클릭 후 아래의 절차대로 진행



○ 제출서류

구분	제출서류		
1. 대상자 전원 공통서류	• 의료법 제8조제1호 및 제2호에 해당하는 자가 아님을 증명하는 의사진단서 1부.		

2. 대상자별 추가서류

- ※ 의료법 제80조제1항제1호에 해당하는 사람
 - 특성화고등학교의 간호관련학과 졸업증명서 또는 졸업예정증명서 1부.
 - 실습 의료기관의 장이 발행한 간호조무사 의료기관 실습이수증명서 1부.
- ※ 의료법 제80조제1항제2호에 해당하는 사람
 - 고등학교 학력이상 졸업증명서 또는 졸업예정증명서 1부.
 - 국·공립 간호조무사양성소의 장이 발행한 간호조무사 교육과정 이수증명서 1부.
 - 실습 의료기관의 장이 발행한 간호조무사 의료기관 실습이수증명서 1부.
- ※ 의료법 제80조제1항제3호에 해당하는 사람
 - 평생교육시설의 간호관련학과 졸업증명서 또는 졸업예정증명서 1부.
 - 실습 의료기관의 장이 발행한 간호조무사 의료기관 실습이수증명서 1부.
- ※ 의료법 제80조제1항제4호에 해당하는 사람
 - 고등학교 졸업증명서 1부.
 - 간호조무사 교습과정을 운영하는 학원의 장이 발행한 간호조무사 교육과정 이수증명서 1부.
 - 실습 의료기관의 장이 발행한 간호조무사 의료기관 실습이수증명서 1부.
- ※ 의료법 제80조제1항제5호에 해당하는 사람
 - 고등학교 졸업증명서 1부.
- ※ 의료법 제80조제1항제6호 중 의료법 제7조제1항제1호에 해당하는 사람
 - 간호학을 전공한 대학(전문대학 포함)의 졸업증명서 또는 졸업예정증명서 1부.
- ※ 의료법 제80조제1항제6호 중 의료법 제7조제1항제2호에 해당하는 사람
 - 보건복지부 장관이 인정한 외국의 간호학을 전공한 대학(전문대학 포함)의 졸업증명서 및 외국의 간호사 면허증 사본 각 1부.
- ※ 외국학교 등을 졸업하고 외국의 면허(자격)를 취득한 사람의 경우는 증명서, 면허(자격)증 등에 대하여 졸업학교 등이 속한 국가의 외교 관할 행정기관에 아포스티유(Apostille) 확인 또는 현지 주재공관(대사관 또는 영사관)의 영사확인 후 우리말로 번역·공증하여 제출 (단, 영문으로 작성된 서류는 우리말로 번역공증을 생략할 수 있음)



- 다. 답안카드는 채점관리시스템에 의해 전산채점 처리됩니다.
- 라. 본인의 성적은 합격자 발표일부터 국시원 홈페이지에서 확인 가능합니다.
- 마. 제출서류는 반환하지 않으며, 합격자 발표 후에도 제출된 서류 등의 기재사항이 사실과 다른 경우, 응시결격 사유 및 응시자격이 없는 것으로 확인된 때에는 그 합격을 취소합니다.
- 바. 본인의 답안카드는 합격자 발표일로부터 90일 이내에 열람할 수 있습니다.
 - O 답안카드를 열람하고자 하는 자는 열람희망일 1일 전 18시까지 [국시원 홈페이지-면허·자격·증명서-답안카드 열람 방문신청]을 통해 예약하고, 회신을 받은 후 열람일정을 확정하도록 합니다.
 - O 답안카드 열람 일정을 확정한 자는 **신분증을 지참하고 국시원(별관)으로 직접 방문**하여, '답안카드 열람신청서'를 작성한 후 열람할 수 있습니다.
 - O 복사, 사진촬영, 메일 전송 등은 불가합니다.

마침